

의안번호	2214274
의 퇴 인	조정훈 의원
회 답 일	2025. 11. 25.
추 계 번호	25F61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교육기관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으로 추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 등 일정한 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 - (개정안)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으로 대안교육기관 추가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내국법인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할 경우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24조제2항제1호 라목)
-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중 특례기부금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법인세수가 감소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상 기부금은 법인이 사업과 관계없이 지출하는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공익성이 있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

※ 손금산입한도액: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하는 내국법인의 기부금의 손금산입 대상 추가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손금산입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기부금 규모 등 가용 정보가 미비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내국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
- 교육부 확인 결과, 대안교육기관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조성한 기부금과 관련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이를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부재로 추계가 곤란
 - 다만, 교육부가 실시한 「2024년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대안교육기관(235개)의 학생 부담금 중 기부금은 평균 444만원인 것으로 나타남¹⁾

□ 따라서 내국법인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중 25.9%에만 기부금 실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장설희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설희	02-6788-4836	shjang@assembly.go.kr